고성군 군민인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46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07. 04.

고성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23. 07. 05.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3. 07. 12. 산업경제위원회 상정 · 원안가결

2. 개정 이유

시·군민안전보험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 및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조례 개정 권고안에 따라 미비 조항 개정

3. 주요 내용

- 가. 보험 정의에 공제를 추가, 보험기관 정의에 공제회 추가(안 제2조)
- 나. 가입대상 명확화(안 제3조)
- 다.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내용 일부개정(안 제4조)
- 라. 보험료 납입 주체 명확화(안 제5조)
- 마. 보험료 청구과정 내 행정적 지원 추가(안 제7조)
- 바. 보험기관 보험료 지급 현황 통보 의무 추가(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없음[복지지원과-21007(2023.5.26.)호]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3-908호
 - 가) 예고기간: 2023. 5. 30. ~ 2023. 6. 19.(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 · 구조문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본문: 붙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개정 목적

-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시·군민 안전보험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 및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미흡한 사항 등을 개선·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안 제2조(정의)	· 계약체결 대상에 공제 추가 · 계약기관에 공제회 추가	· 적정 (성과감사 지적사항 개선)
안 제3조 (가입대상)	현행 거주지 등록 외국인 구체화국내거소신고인명부 등재 외국국적자외국인등록대장 등재 외국인	· 적정 (대상 구체적 명시)
안 제7조 (보험금 청구)	· 자구 수정(신청 → 청구)· 청구대상 자격에 대리인 추가· 청구 관련 행정적 지원조항 신설(②)	· 적정 (행안부 표준조례안 적용)
안 제8조 (보험금 지급 제외)	· 그 밖에 법령 또는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추가	· 적정 (행안부 표준조례안 적용)
안 제9조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지급 및 환수현황 의무 통보 조항 신설(②)	· 적정 (보험기관 의무 부과)

○ 종합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안전보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흡한 사항 등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개정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변경사항은 물론, 청구소멸기간 (3년) 및 청구 절차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으며
- 특히, 경남도 주관 시·군 안전보험 운영실태 <u>성과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u> 계획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 경상남도 18개 시·군 안전보험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요약)

- 추진계획 수립시 보장항목 필요성 검토 및 실효성 확보 노력 미흡
- 최저가 보험기관 선정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미흡
- 조례 개정 필요사항 미반영 등 제도 정비 미흡
-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등 홈페이지 공고절차·홍보 등 미흡
-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 8. 토 론 : 없음.
- 9. 심사결과 : 2023. 7. 12. 원안가결 함.